

제 3008호	화순군공보	발행일 : 2021년 4월 29일 발행인 : 화순군수 발행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1-52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폐지 고시 1							
화순군 고시 제2021-57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2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713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							
화순군 공고 제2021-715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4							
화순군 공고 제2021-721호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편의시설) 시행업체 재공고 5							
화순군 공고 제2021-724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7							
화순군 공고 제2021-729호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등 2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8							
화순군 공고 제2021-730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4							
화순군 공고 제2021-731호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화순군 공고 제2021-733호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화순군 공고 제2021-734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화순군 공고 제2021-735호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6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략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736호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8
화순군 공고 제2021-73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5
화순군 공고 제2021-751호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6
화순군 공고 제2021-75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3
화순군 공고 제2021-756호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88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폐지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폐지하고자 고시합니다.

2021. 4. 29.

화 순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화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소로2-44호선)개설공사
3. 면적 및 규모 : 2,548㎡

노 선 명	연장(m)	폭원(m)	면적(㎡)	비고
소로 2-44	197	10	2,54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 순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379-3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8.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앵무동길 18 외 15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8건, 폐지 8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9.

화 순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 주택 수 : 14,857호

※ 14,997호 중 건물공시 6호, 미공시 120호, 국불미공시 12호, 국공유기타미공시 2호

다. 공시사항 :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주택가격

라. 공시일자 : 2021년 4월 29일

2.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2021. 4. 29. ~ 5. 28.

나.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가. 기간 : 2021. 5. 31. ~ 6. 24.

나. 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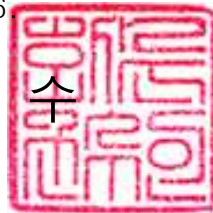
4.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379-3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6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4. 26. ~ 2021. 5. 21.(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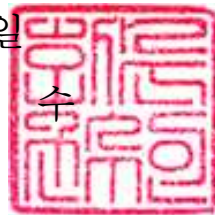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2021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사업수행자 시행 재공고

화순군 농촌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편의시설)을 시행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화 순 군 수



1.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명 :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대상 :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
- 사업량 : 10가구(1가구당 3,800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시설
- 사업비 : 38,000천원(국비 19,000, 도비 5,700, 군비 13,300)

2. 신청 자격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업체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 사회적 기업 등(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

3. 공고 및 접수 일정

- 공고게시 : 화순군 홈페이지 및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공고기간 : 2021. 4. 7. ~ 4. 23. (16일간), 1차
- 재공고기간 : 2021. 4. 27. ~ 5. 7. (10일간), 2차
- 신청접수 : 2021. 4. 27. ~ 5. 7. 17:00까지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사업안내’ 에서 선택하여 공모신청

-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은 ‘e-나라도움’ 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
- ※ e-나라도움 콜센터 : 1670-9595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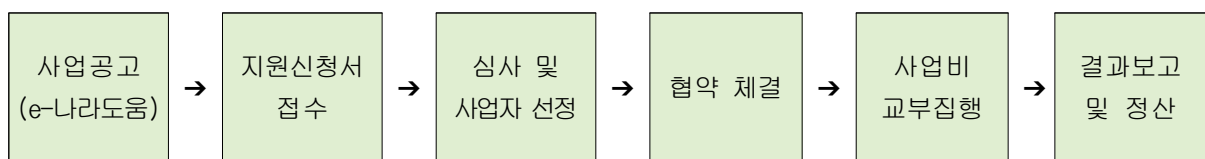
- 상기 신청자격 충족 업체
- 장애인 가구(사업대상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설치·개선할 편의시설 등의 견적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사항으로 화순군청 도시과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유선연락 후 안내받을 수 있음.

-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 경쟁시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2021. 5월중 /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 국고 지원 금액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보조금 통합 예탁 계좌로 지급
-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 사업추진 흐름도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 이 공모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수행자는 주택개조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화순군청의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7. 문의처 : 화순군청 도시과 공동주택팀 신혜경(☎ 061-379-3842)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압류자동차를 인도하고자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2. 공고기간 : 2021. 4. 27. ~ 5. 1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내 용	송달불능사유	비고
이*선	771117-**** ***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 을4길 **, ***동 ***호 (*****파크)	체납자 압류차량 인도명 령서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

※ 공고 기간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체납자 압류자동차 인도 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재무과 세외수입팀 061)379-3155

2021. 4. 27.

화 순 군 수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공고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추진에 따른 최적의 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화 순 군 수



-
1. 모집기간 : 2021. 4. 27.(화) ~ 5. 3.(월) 18:00
 2.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21명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모집)
 3. 모집분야 : 토목, 상하수도 관련분야
 4. 응모자격
 - 가. 토목 및 상하수도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
 - 나. 상수도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7급 이상의 실무담당 공무원
 5. 자격제외자
 -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취수시설 설치 2,200톤/일	1,500	2021. 5 ~ 2021. 12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1,500전	543	2021. 5 ~ 2021. 8	

나. 평가내용

- 시공성, 내구성 및 안전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이용성(스마트미터링), 경관성(암반집수정 수평 굴착)

7. 예비평가위원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21. 4. 27.(화) ~ 5. 3.(월) 18:00

나. 접 수 처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 E-mail 접수시 : yong2026@korea.kr

※ 방문·우편 접수시 : 우)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 제출 시 전화(061-379-3854)로 접수유무 확인 바람

8.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자 : 2021. 5. 4. 예정

나. 선정인원 : 7명(위원장 포함)

다.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 11명씩 추천
- 다빈도,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라.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위원 개별 통지(2021. 5. 6. 예정)

9. 제안서 평가일시

- 일시/장소 : 2021. 5. 10(월) ~ 5. 12.(수) 서면 평가

※ 군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및 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 통지

10. 제출서류

가.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붙임1)

나. 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등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내주신 자료는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완료 시 해촉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온라인(서면) 수당 등 지급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061-379-3854)로 문의

붙임 : 1.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제안서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작성자 : (인)

화순군수 귀하

【붙임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1년 04월 00일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내주신 자료는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신기술·특허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공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화순군 에서 시행하는 “화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및 “춘양 지방 상수도 취수원 개발사업” 암반 집수정 수평굴착 공법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 (후보자)으로 등록하기 위해 평가위원(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 · 이용목적 : 평가위원(후보자)의 적정성여부검토 및 평가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계좌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권고사항 : 평가위원(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평가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8개의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양의 일

평가위원 후보자 성명: (인)

화순군수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4. 27. ~ 2021. 05. 12.(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보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061-379-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1. 04. 27.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 등 개정사항 반영

○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회자 확대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항)

⇒ “영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존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확대 : 기존 면제대상 공동명의회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 면제 자동차 감면 적용시 소유 예외사항 규정 조문 변경 반영(안 제2조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나. 상위법 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2021년부터 경감률 직 접명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0조2)

-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기준 마련(2020.12.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0.(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enus5323@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79-3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의견 내용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관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u>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u>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u>장애인과</u> 의 관계가 「 <u>지방세특례제한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 ----- ----- ----- -----

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 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

〈삭 제〉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u>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u> <u>다.</u>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주택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과 용도구역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정의(「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국토계획법 제2조)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비교>

구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적 성격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제)	용도구역(보상 미 전제)
실효제(일몰제) 대상	실효 대상	실효규정 없음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	결정고시 후 10년 내 수립	공원조성계획 미 대상
사업시행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 의무 없음
매수청구 기준	결정고시 10년 이상 된 지목상 대지	효용 감소 또는 수익 불가능 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재산세 50% 감면	감면 규정 없음

- 도시공원은 기능·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구분(「공원녹지법」 제15조)

-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조례공원)

- 도시공원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10. 1.부터 실효 적용(「공원녹지법」 제17조)

「화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함

현 행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법인	5 ~ 50 만 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 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 2021년 지방세법등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된 조례등을 정비하여 과세를 위한 자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세목 명칭변경: 「지방세법」 개정
 - 군세조례 제5조 ~ 제6조(세율), 제7조(신고의무)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
- ⇒ “사업소분”에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0.(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enus5323@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79-3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견내용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항”을 “법 제78조”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250원

나.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다.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제7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을 “연면적,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절 <u>균등분</u> 제5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개인</u> 가. 화순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u>법인</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th style="text-align: center;">세액</th></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의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 style="text-align: center;">500,000원</td></tr>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td><td style="text-align: center;">350,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의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	350,000원	제1절 <u>개인분</u>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의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	350,000원						

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 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 일 현재 해당 사업소 의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인 법인과 자 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 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50억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 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

제2절 재산분

제6조(세율)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
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2
50원

제7조(신고의무) ① <u>재산분</u>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u>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u>나.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초과)</u> <u>다.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u> 제7조(신고의무) ① <u>사업소분</u>----- ----- ----- 연 <u>면적, 세액</u>----- ----- ----- -----. ② (현행과 같음)
---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함

현 행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①기본세율 (5~20만원) ②연면적세액
		법인	5 ~ 50 만 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 원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 상위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세목 명칭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0.(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enus5323@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
(061-379-3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견내용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u>재산분</u> 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 ----- ----- ----- ----- ----- <u>사업소분</u> ----- ----- -----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함

현 행				개 정			
구분	납기	납세자 (5개)	세율체계	구분	납기	납세자 (3개)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개인분	8월	개인	<좌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①기본세율 (5~2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m ² 당 250원				②연면적세액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월급여액 × 0.5%	종업원분	매월	사업자	<좌동>

- 2021년 지방세법등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된 조례등을 정비하

여 과세를 위한 자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세목 명칭변경: 「지방세법」 개정

- 균세 시행규칙

- 제3장 제1절 제5조 : 균등분 → 개인분
- 제3장 제2절 : 재산분 → 사업소분
- 제6조 제1항 : 제83조 → 제84조, 재산분 → 사업소분
- 제6조 제2항 : 제50조 → 제49조, 제51조 → 제50조
- 제7조 : 재산분 → 사업소분

- 균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 제6호 서식, 제14호 서식 : 재산분 → 사업소분
- 제3호 서식 : 균등분 → 개인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0.(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enus5323@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밖의 사항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79-3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의견 내용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3조”를 “법 제84조”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2호 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세(균등분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세(재산분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5호 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세(재산분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
-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12호 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5호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6호 서식] 건축물조사표
- [별지 제17호 서식] 주택조사표
- [별지 제18호 서식] 선박조사표
- [별지 제19호 서식] 항공기조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 [별지 제21호 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 [별지 제22호 서식]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 [별지 제23호 서식]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 [별지 제24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 [별지 제25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 [별지 제26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 [별지 제27호 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 [별지 제28호 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 [별지 제29호 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화순군)

[illegible]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화순군)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담당자	팀장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화순군)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 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담당자	팀장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u>균등분</u>	제1절 <u>개인분</u>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u>균등분</u>)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 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 ----- -----(<u>개인분</u>) -- ----- -----.
제2절 <u>재산분</u>	제2절 <u>사업소분</u>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 과부서의 장은 <u>법 제83조</u> 에 따 라 주민세 <u>재산분</u> (이하 이 절에 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u>재산분</u>)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 ----- <u>법 제84조</u> ----- -- <u>사업소분</u> ----- ----- ----- (<u>사업소분</u>) -----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u>「지방세기본법」 제50조</u> 에 따 른 수정신고 및 <u>같은 법 제51조</u>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 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u>「지방</u> <u>세기본법」 제49조</u> ----- ---- <u>같은 법 제50조</u> ----- ----- ----- -----.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 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 식의 주민세(<u>재산분</u>)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 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 ----- ----- (<u>사업소분</u>) ----- ----- -----.
--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제9조)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개정
 - 군세환급금 관련 조문 개정 : 영 제39조 → 영 제37조로 개정

나. 법제처에서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10조)

- “상시” → “**항상**”, “잔여금” → “**남은 금액**”, “자력”
→ “**재산적능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20.(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enus5323@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379-3420

4. 그밖의 사항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세정팀(☎061-379-3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명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견내용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잔여금”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자력(資力)”을 “재산적 능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 ----- -----. ----- ----- ---- <u>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u> ---- ---- <u>항상</u> ----- -----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 ----- ----- ----- <u>남은 금액</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u>영 제37조</u> ----- -----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생략)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u>자력(資力)</u>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u>지방세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u>상시</u>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재산적 능력</u>-----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 ----- ----- <u>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u> ----- <u>항상</u> ----- -----.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2.2.3\]](#)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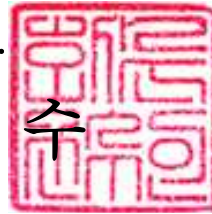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합,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28.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하○○(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용호길) 등 152건(별첨 참조)
3. 공고기간: 2021. 4. 28. ~ 5. 12.(14일간)
4. 문 의 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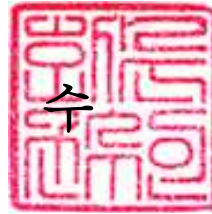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순군 공고 제2021 - 751호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2021.6.10.) 됨에 따라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 내의 상위법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새로 제정된 법령으로 반영 (안 제1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용어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 “도시림” → “도시숲”, “생활림” → “생활숲”

다. 조성·관리계획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안 제3조)

-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림등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조성·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법 제6조에 의거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구역에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라.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수정(안 제3조의2)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를 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는 사항 중에서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 편도 기준 5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바.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 시 승인(안 제21조)

-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를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
 -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승인받으려면 별지 1호서식 신청서 제출

- 14일 이내 승인결정 및 통보하되, 보완 필요 시 보완 요구
- 비용은 승인 받은 자가 부담, 군수는 필요시 협의 가능

사. 법 개정 반영으로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안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19.(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산림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udac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3) 팩스 : 061-379-374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061-379-3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조례 제 호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4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의거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화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3조”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림조성”을 “도시숲 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업

다. 편도 기준 5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을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따른 기간은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자와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이 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가로수 조성협의, 승인, 비용 부담 및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구성한 화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로수 조성·관리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 제 거	☐ 가지치기	☐ 기 타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전화번호

사업대상	위		면	
			적 (㎡)	
	치수		규 수고	수
	종		직경	량

작업사유	
------	--

작업방법	
------	--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	--

「화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

- | | | |
|----------|-------------------------|---------|
| 1. 사업계획서 | 2. 위치도 | 3. 현황도면 |
| 4. 현장사진 | 5. 타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서류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화순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u>	<u>화순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u>도시림</u> 등의 조성·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도시림</u>”이란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u>생활림</u>”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으로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u>도시숲 등</u>----- -----. 제2조(정의) ----- -----. 1. “<u>도시숲</u>”이란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 2. “<u>생활숲</u>”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 11. (생략)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 등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화순군의 관할구역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

3. ----- 법 제2조제3호-----
-----.

4. ~ 11. (현행과 같음)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의거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화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의2(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1. ----- 도시숲등 -----

·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
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
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림조성과 관련이 있는

--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승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

가.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

나.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
재 비용이 1억원 이상인 사
업

다. 편도 기준 500미터 이상
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3. ----- 도시숲등-----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도시숲 조성-----

부서의 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u> 전문가 2명 이상	3. <u>도시숲등</u>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제3조의 <u>도시림등</u>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 여야 한다.	① ----- <u>도시</u> <u>숲등</u>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가지치기) ①·② (생 략)	제12조(가지치기)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u> <u>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u> <u>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u> <u>한다.</u>	〈삭 제〉
제15조(지형과 토양의 보호) ① (생 략)	제15조(지형과 토양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u>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u> <u>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u> <u>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고자</u> <u>할 때에는 군수와 협의를 하여</u> <u>야 한다.</u>	〈삭 제〉

제21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등의 민간위탁)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조

제21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따른 기간은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행위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은 자기의 부담으로 한다.

〈삭 제〉

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 “갱신헌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5. 20.(21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일자리정책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y4745@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

3) 팩스 : 061-379-320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팀

(☎061-379-31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갱신허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 ----- ----- ----- ----- <u>있으며,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의 계약으로 정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 4. 29.

화 순 군 수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영세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1. 8. 31.	2021.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착한임대인	매출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1)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화순군청 재무과(☎ 061-379-3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